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0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 박홍근·박성준·양정숙

안규백 · 양이원영 · 양기대

맹성규 · 조오섭 · 김경만

박영순 · 홍성국 · 홍익표

윤미향 · 김용민 · 남인순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고 있음. 그런데 현행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르면,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,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정공제회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- 1.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
- 2. 회원(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)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
- 3.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
- 4.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·후생사업에 관한 사무
- 5.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-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	정보의 처리) ① 공제회는 다
	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
	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
	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
	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
	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
	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
	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	1.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
	2. 회원(회원의 유가족을 포함
	한다)에 대한 급여에 관한
	<u>사무</u>
	3.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
	<u>무</u>
	4.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·후생
	사업에 관한 사무
	5.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
	한 사무
	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
	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
	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
	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

한다.